

본 문서는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한 참고문서입니다. 일본어를 번역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일본어 및 영문 버전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일반선박보장계약증명서 교부신청서의 제출요령

처음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각 지방운수국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주의 :

2004년 12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의 기간 중에 일반선박보장계약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일반선박보장계약증명서 교부신청서(양식 제 6호(제 12조 관계))」가 아닌 「일반선박보장계약증명서 교부신청서(별도양식 1(부칙 제 3조 관계))」를 사용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또한 2005년 2월 28일까지 교부되는 증명서는 「일반선박보장계약증명서」입니다만, 동 증명서는 2005년 3월 1일 이후에 교부되는 「일반선박보장계약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것은 2005년 2월 28일 이전에는 법률의 본칙이 실시되기 이전이므로, 부칙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설명에서는 신청서의 명칭 등을 2005년 3월 1일 이후의 것으로 사용합니다.

1. 제출서류

일반선박보장계약증명서의 교부신청에는 아래의 (1)~(4)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에 대해서는 일본어(고유명사는 알파벳 사용가능)로 기입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2)~(4)에 대해서는 일본어 또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일본어 또는 영문의 번역문(각 번역문에 「본 번역문을 근거로 지방운수국이 신청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취지의 주의문구 및 신청자의 서명이 있는 것에 한 함)을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일반선박보장계약증명서 교부신청서

신청서에는 소정 금액의 수입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2) 보장계약의 계약서 사본

- 보험증권(Policy) 또는
- 보험증서(Certificate of Insurance) 또는
- 가입승낙증명서(Certificate of Entry)

및

- 보험약관(일반적으로 해당 보험계약에서 법 제 39조의 5, 제 1항 제 1호 및 제 2호의 손해(일반선박유류오염손해 및 선체의 철거 등을 위한 비용)가 전보대상임을 나타내는 조항의 발췌만으로 가능합니다.)

(3) 국적 및 통수를 증명하는 서면

선박국적증서 및 국제 통수 증명의 사본이 이에 해당합니다.

(4)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2. 제출처 및 제출방법

각 지방운수국 본국(전국에 10 개소 있습니다.) 또는 오키나와의 경우, 오키나와 종합사무국으로 지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제출처인 지방운수국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지만,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타 지방운수국 등으로 신청을 부탁드릴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편으로 제출하실 경우에는 등기우편 등과 같이 배달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또한,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메일)를 발송문 등에 명시하고, 증명서를 반송하기 위한 반신용 봉투(반송처 주소를 기입한 후, 등기우편에 필요한 우표를 부착한 것)를 동봉하여 주십시오.

또한, 전자신청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각 지방운수국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3. 교부에 필요한 기간

신청을 접수한 후부터 교부까지 1 개월 이상의 기간을 예상하여 주십시오. 특히 국토교통성에 처음 접수하는 보험회사의 보험의 경우에는 더욱 시간이 필요할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일반선박보장계약증명서 교부신청서의 기입요령에 대해서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운수국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1) 신청자에 대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일반선박소유자 등(복수일 경우, 그 중 1 명)가 신청하여 주십시오. 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또한 법인일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도 기입하여 주십시오. 성명을 기입한 후 날인 대신 서명도 가능합니다.

(2) 대리인에 대해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또한 법인일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도 기입하여 주십시오. 날인대신 서명도 가능합니다.

(3) 일반선박소유자 등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일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일반선박소유자 등(선박소유자 및 선박임차인(나용선자 또는 정기용선자가 해당)이 해당)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단, 신청자와 일치할 경우에는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일반선박보장계약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한 선박 및 그 보장계약의 내용

①선명 및 선종

②선박번호 또는 신호부자

③국제해사기구(IMO) 선박식별번호

부여 받은 경우에는 기입하여 주십시오.

④선박의 국적

⑤총 톤수

국제 총 톤수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⑥보장계약의 종류

상호보험조합 (Mutual Club) 에 의한 P&I 보험일 경우에는 「선주책임상호보험」으로 기재하고, 상호보험조합이 아닌 보험회사의 P&I 보험일 경우에는 「선주책임보험」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종류일 경우에는 그 종류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⑦보장계약의 기간

보험의 계약기간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단, 1 년을 초과하는 보험계약이라도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최장 1 년입니다.

⑧선박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의 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와 관련된 전보·담보의 유무

보험계약이 상기 조항에서 규정하는 일반선박유류오염손해 및 선체의 철거 등을 위한 비용을 보전하는 것임을 확인한 후, 「유」라고 기재하여 주십시오. 「무」인 경우, 적법한 보험계약이 아니므로,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⑨보장계약에 의해 전보·담보되는 금액

보험금액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선주의 책임을 보험금액의 규정 없이 보전하는 계약일 경우에는 「한도액을 규정하지 않는다」라고 기재하여 주십시오.

⑩보험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연락처, 법인일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⑪선박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호 중 보험자 등의 해당 구분

○ (ア) 또는 (イ)의 해당구분을 기입

⑩에 기재한 보험회사가 다음의 (a)~(d)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ア)가 됩니다. 어느 것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イ)가 됩니다.

- (a)일본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Japan PI)
- (b)어선보험조합(어선 PI)
- (c)일본손해보험회사 및 일본에서 영업면허를 취득한 외국손해보험회사
- (d)CLC¹ 조약체결국의 정부가 발행 또는 공인한 CLC 증명서에서 보험자 또는

¹ 오일에 의한 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 관련 국제조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보증제공자로 되어 있는 외국의 보험회사 또는 보증회사

○증명서를 발행 또는 공인한 외국명

(d)에 해당할 경우, 어느 나라의 정부로부터 증명서가 발행 또는 공인되었는지 해당 외국명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다음의 항목은 ⑪에서 「(イ)」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⑫보험자 등의 설립연월일

⑬보험자 등의 사업영위와 관련된 근거법령 및 해당법령에 따른 면허의 유무 및 종류

보험회사가 본국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데 근거가 되는 법령의 명칭 및 해당조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또한, 보험회사가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면허 또는 허가 등의 유무 및 그 내용(해상보험업 면허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⑭보험금·보증금의 지불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보험자 등의 일본 내 사무소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현지 사무소에 대해서 기재하여 주십시오.

⑮보험자 등의 직전 사업년도 중, 본 신청과 관련된 보장계약과 동일 종류의 보증계약과 관련된 선박의 척수 및 합계 총 톤수, 보험료 수입액 또는 보증료 수입액, 보험금 지불액 또는 보증금 지불액

전년도의 P&I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선박의 척수, 합계 총 톤수, 보험료 수입금 및 보험금 지불액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⑯보험자 등의 직전 5 개 사업년도 중, 본 신청과 관련된 보장계약과 동일 종류의 보장계약을 체결한 선박에 의한 일본 내 사고의 유무 및 개요

최근 5 개 사업년도 중 일본에서의 P&I 보험가입선박의 보험금 지불이 발생한 사고의 유무와 해당하는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개요(연월일, 선명, 사고발생지점, 사고상태 등)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⑰보험자 등의 직전 5 개 사업년도 중,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사업영위와 관련된 법령위반에 관한 처분의 유무 및 내용

보험회사의 본국의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법령위반에 관한 처분(영업정지처분 등)의 유무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처분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⑱보험자 등의 직전 사업년도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의 내용

기재하는 대신 별지를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